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208842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나20884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91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8.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4. 17. 선고 2023가단914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3. 7.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3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면서 숯불고기 집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되자 원고는 피고가 숯불연기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사를 한다면 공사비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별도의 덕트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용 675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위 공사비의 절반인 337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우석, 판사 박재형, 판사 정욱도

별지